

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

구 분	내 용	비 고
감사주체	행정안전부	
감사내용	<p>1. 결손금에 대한 충당없이 과오납금 환부처리</p> <p>▶“지방세법”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에 다른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5.1.1.~2009.9.30.까지 과오납금을 환부처리하면서, 과오납금 환부대상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부금액에서 충당하지 않고 환급하여 총 31건의 1,145천원의 지방세수를 누락한 사실</p> <p>2. 부동산 실명법위반 및 미등기전매자 취득세부과 소홀</p> <p>▶“지방세법”제150조(납세의무자등) 제1항 및 제121조 취득세 부과 및 제120조(신고 및 납부)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, 이를 신고치 않을 때에는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불성실 신고가산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2005.1.12.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토지 및 건물을 ○○○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후 2005.5.22일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1건 54,499,280원, 농어촌특별세 5,449,920원, 합계 59,949,200원 을 부과 누락한 사실</p> <p>3.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누락</p> <p>▶“지방세법”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유주식비율이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4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43,944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</p>	
조치지시내용	<p>1. 과오납금 환부처리시 환부권자 지방세 결손 및 체납여부 확인후 환부</p> <p>2.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관리 담당 부서와 세무 부서간 정보공유로 지방세 부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</p> <p>3. 과세자료가 세무부서에 통보 시 담당자가 조사 후 과세하여 세수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 바라며, 누락된 취득세는 추징조치</p>	
처리결과	<p>1. 2009. 12. 31 취득세 부과 및 징수완료</p> <p>2. 2009. 12. 15. 취득세 부과</p> <p>3. 2010. 3. 19. 세무과 내 회의개최 후 담당자 교육</p>	
참고사항	2010. 3.15. 고액체납시세 부산광역시시 세정과 이관	